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신 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87
----------	------

발의연월일 : 2007. 9. 13.

발 의 자 : 신 명 · 선병렬 · 홍미영
오영식 · 김영춘 · 김부겸
김교홍 · 김태년 · 이미경
장향숙 · 제종길 · 노웅래
노현송 · 김덕규 · 박상돈
김재윤 · 손봉숙 · 김성곤
김형주 · 이경재 · 윤원호
최순영 · 배일도 · 안홍준
박찬석 · 한명숙 · 백원우
이경숙 · 이인영 · 박기춘
의원(30인)

제안이유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투자국가 개념이 대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사회정책 그리고 개별 사회정책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전체의 공생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각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걷는 것이 필요한데 막상 보도(步道)는 각종 공공시설물(전신주, 환기구, 전화부스, 가로수, 지하도출입구 등)과 불법적치물(노점상, 입간판, 불법주정차차량 등)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도구조(폭·높이·경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흡하여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그 원인은 첫째, 종래 압축성장 지향의 양적 접근으로 인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로 도로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과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차량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완비되었지만 보행과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둘째,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할거주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어 왔으며, 셋째,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의 행정주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와서 사업추진의 주동력원이 되어야 할 주민참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임.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

건 개선 캠페인이 추진되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성과는 있었지만 국가적 아젠다 형성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 조례들의 모범(母法)이 없어서 실효성도 매우 미약한 상황임.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보행권을 확보하고 편안한 보행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관련 각종 법령·제도 등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을 촉진하여 보행권 신장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질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행자, 보도, 보행여건, 보행여건 주관기관, 보행관련사업 등, 보행정책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행자 안전우선, 보행여건의 균등화, 쾌적성·미관성 등 보행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들을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편안하게 걸을 권리, 보행정책에 대한 의견제

출 등 보행권의 내용을 열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의 확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 관계자들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타 법률 제·개정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기본계획과 자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예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보행정책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예시하고 각 위원회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행정책 수립·시행하는 주체들이 보행정책의 연구·추진, 5년마다 실태조사,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시범사업의 추진,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거리·구역 등에 대한 지정·지원과 같은 보행여건 개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행여건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권 관련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관련 각종 법령·제도, 여건 및 의식 등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권리(이하 “보행권”이라 한다) 신장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자”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자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를 말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과 도로의 좌측을 포함한다.
3. “보행여건”이란 보도 등 보행자가 이동하는 공공의 공간 및 그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시설물, 교통체계 및 가로경관·소음·냄새

등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생태적 생활환경을 말한다.

4. “보행여건 주관기관”이란 보행여건 관련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제정·운용하거나 관련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보행관련 사업자 등”이란 시설물 등의 설치·관리사업을 하거나 보도에 접하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토지 및 시설물을 소유·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보행정책”이란 보행관련 법령·제도,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의식개선 등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보행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여건 주관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행여건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 보행관련 사업자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보행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권) ① 보행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한 보행여건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2. 소음·냄새 등 각종 공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쾌적하게 걸을 권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및 관련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보행여건이 적절히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관계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및 제4조의 취지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의 확보·지원, 각종 관련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의 수립, 신도시 건설, 건축물 신·개축 허가 등 각종 시설물 설치 허가, 도로 신설 및 개·보수 허가 등 보행권 및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제4조의 취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행관련 사업자 등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행자는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질서를 준수하며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행권 및 보행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행권 및 보행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7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 ① 국가는 5년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개선목표에 관한 사항
2.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소관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여건 개선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자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수기관 또는 우수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행정책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의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의 구성, 소득, 지리적·문화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수립시 제11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⑤ 그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1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내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기본계획(이하 “자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기본계획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별 지방자치시행계획(이하 “자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본계획 및 자치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관할지역의 관련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사전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각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자치기본계획 및 자치시행계획의 내용·절차·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국가보행정책위원회 설치) ① 기본계획 등 보행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정책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보행여건 개선지표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경찰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3. 보행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④ 정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임기, 운영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 설치)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지역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자치기본계획 및 자치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보행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지역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및 보행여건 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항

6.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임기, 회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적극적인 보행여건 개선조치 등

제14조(보행정책의 연구·추진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이 원활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자치기본계획과 자치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지표 작성에 필요한 사전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및 우수사업자 지원 등 우수사례의 전국적 보급·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의 연구·개발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 강화에 관한 우수사례 및 매뉴얼 제작·보급
4.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관련 행정조직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 지원
5.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의식개선 및 선진 보행문

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 지원

6. 선진외국의 보행정책 관련 우수사례 조사

7.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인구·보행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보행여건 주관기관 및 보행관련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보행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①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분야별·지역별 보행여건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공표·보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행여건 개선지표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

행여건 개선을 위한 우수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①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치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제11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종합결과를 심의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의견, 권고 또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보행정책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조치의 이행실적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우수 거리·구역·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거리 또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거리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인증표지 부여, 용자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 우선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행관련 사업자 등 중에서 보행정책 추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또는 사기양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행불편 신고센터 운영, 시민교육 등 필요한 제도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관련 질서운동, 시민교육 등의 보행

관련 사업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보행여건 지킴이)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신고·계몽 등을 위하여 보행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회원, 보행권 증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보행여건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보행여건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제시
2. 이 법에 위반되는 지역 보행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
3.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계몽
4.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관련 실태조사 참여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행여건 지킴이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행여건 지킴이의 위촉방법, 운영,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1) 국가는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안 제7조).
- (2) 보행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둔다(안 제11조 및 제12조).
- (3) 행정자치부장관은 보행정책이 원활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안 제14조).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인구·보행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안 제15조).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우수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17조).
- (6)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상황의 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9조).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우수거리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인증표지 부여, 용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20조).
-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관련 질서운동, 시민교육 등의 보행관련 사업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안 제21조).
- (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여건 지킴이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적극 추진 및 보행자의 권리증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행정책 기본법의 결여로 실효성이 미약하여 시범사업, 쉬운 사업 위주로만 추진하고 있다¹⁾.

1) 보행권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2007. 9)에 따르면 보행여건 개선사업으로는 거리특성화 사

따라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실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향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규모를 예측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²⁾.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 송대호(02-788-3773, bce@nabo.go.kr)

업, 보도블럭 교체 등의 사업이 있고, 민간단체의 보행여건 개선운동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차 없는 날 개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등이 있음.

2) 단, 제정안의 국가보행정책위원회 및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위원회 운영비용은 민간 위촉위원의 참석수당 등 연간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